

『원적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』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 방법 고시

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, 「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9조, 제10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고 정비시범구역 내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. 02. 24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무분별하게 난립한 광고물을 정비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, 간판개선사업 지역을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시범구역 내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을 고시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(적용의 범위)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, 「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9조, 제10조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·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.

제3조(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) 정비시범구역은 「원적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」의 대상인 가좌동 풍림아파트상가(원적으로47번길 6)로 지정한다.

제4조(일반적인 표시방법) ①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은 2개 이내로 하며, 도로의 굵은 지점에 접한 업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벽면이용간판

1개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.

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종이 또는 시트지 등 창문이용 광고물과 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상단이나 주출입구에 건물명을 표시하는 간판, 벽면을 이용한 연립형 간판 등은 광고물의 총수량에서 제외한다.

제5조(벽면이용간판의 표시방법) ① 벽면이용 간판은 1개 업소에서 1개를 표시 할 수 있으며 입체형으로 설치하되, 벽면에 미관을 위한 베이스판을 설치하고 그 위에 입체형을 설치 할 수 있다.

② 간판의 가로 크기는 당해 업소 폭의 80% 이내로 하여야 하며, 최대크기는 10m 이내로 표시하고 주된 문자의 세로크기는 50cm이내로 한다.

제6조(돌출간판의 표시방법) ① 돌출 간판은 1개 업소에서 1개를 표시할 수 있으며 돌출간판 대신 소형 돌출간판을 설치 할 수 있다.

② 소형 돌출간판 1면의 면적은 0.36㎡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며, 간판 두께는 20cm를 초과할 수 없다.

제7조(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) ① 지주이용 간판 표시를 금지한다. 단, 도로변에서 안쪽으로 위치하여 지주이용간판의 표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소의 경우 지주형태의 간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,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을 따른다.

② 2개 이상의 업소가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.

제8조(적용특례) 정비시범구역 내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당히 불합리하고 그 사유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면 경관과 생활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【 위치도 】



부 칙

1. **(시행일)**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2. **(기타사항)**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은 관계법령과 조례 등에 따른다.